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 변경 〉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83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 변경(안 제2조제12호 등)	2
2. 부칙	9
※ [참고]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조직 및 예산 현황	1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1. 20.

다. 회 부 일 : 2026. 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 산하 특별법인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국가유산 수리 및 감리 등 국가유산 전반에 걸쳐 업무 범위가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재단 명칭은 ‘전통건축’에 한정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수행 중인 업무 범위와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있음.

이에 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국가유산 수리 전반을 포괄하는 공적 기능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 재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2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Ⅲ. 검토의견

1.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 변경(안 제2조제12호 등)

개정안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12. “국가유산감리원”이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국가유산감리업자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u>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u> 에 소속되어 국가유산수리의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 17. (생략)	제2조(정의) ----- -----. 1. ~ 11. (현행과 같음) 12. ----- ----- ----- <u>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u> 에----- ----- -----. 13. ~ 17. (현행과 같음)
제33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국가유산수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u>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u>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동산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실제로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3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 <u>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u> 을----- ----- ----- ----- ----- ----- ----- ----- -----

현행	개정안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생략) 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국가유산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에 따른 <u>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u>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국가유산감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u>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u>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때에는 그에게 소속된 국가유산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제41조(감리의 제한)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u>으로----- -----. ③ (현행과 같음) ④ -----<u>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u>을----- ----- ----- -----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1조(감리의 제한) ----- ----- -----

현행	개정안
될 때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 3. (생략) 4. 제41조의2에 따른 <u>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u>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 제4장 <u>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u> 등 제41조의2(<u>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u>의 설립 등) ①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u>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u>(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 8. (생략) ② ~ ⑤ (생략)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u>이----- ----- ----- 제4장 <u>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u> 등 제41조의2(<u>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u>의 설립 등) ① ----- ----- ----- ----- -----<u>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u>----- ----- ·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¹⁾에 따르면 “전통건축수리기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①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전통건축의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석재 등)와 재료 등의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전시
2.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보급확대 및 산업화 지원
3. 전통수리 기법의 조사·연구 및 전승 활성화
4. 국가유산수리(국가유산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술진흥재단”은 전통건축 수리기술 진흥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유산청 산하 법인으로, ① 전통건축의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석재 등)와 재료 등의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전시, ②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보급확대 및 산업화 지원, ③ 전통수리 기업의 조사·연구 및 전승 활성화, ④ 국가유산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²⁾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의 수리 ⑤ 제38조제2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은 “전통건축”에 한정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수행 중인 업무 범위와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5. 제38조제2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6. 북한의 전통건축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보존 지원

7.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국가유산수리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재단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 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한 경우

2. 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한 경우

이에 개정안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국가유산수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재단의 기능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 재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특히, 국가지정유산 4,426건 중 1,042건(23.5%)이 전통건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건조물(석조·목조문화유산) 및 민속문화유산(전통가옥)에 해당한다는 점³⁾, 현재도 현행법령에 근거하여 재단에서 지정문화유산과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⁴⁾ 등을 고려할 때, 재단의 명칭을 개정안과 같이 변경하는 것은

3) “통계로 보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 2025. 8., pp.24~40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①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 3. (생략)

4. 국가유산수리(국가유산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제38조제2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6. ~ 8. (생략)

② ~ ④ (생략)

⑤ 발주자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국가유산수리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국가유산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에 따라 재단의 명칭에서 “전통건축”이 “국가유산건축”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현행법 제41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이라는 문구 또한 예컨대 “국가유산 수리기술의 진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⁵⁾.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은 재단의 현행 명칭이 업무 범위를 아우르고 있지 못하므로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필요하나, 개정안에 따른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역시 ‘건축’에 한정된 명칭으로 국가유산수리, 감리 및 전통재료 수급 등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바,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재단의 업무가 “전통건축”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국가유산수리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통해 ‘건축’ 외 전통재료, 전통기법, 보존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다.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과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감리**”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일반감리**: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는 업무

나. **책임감리**: 일반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 행사하는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

5) 국가유산청도 동일한 의견임.

고 있음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바, ① 국가유산수리재단,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재단, ③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 중 하나로 명칭 변경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국가유산수리기술자협회는 개정안이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업무 영역 및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기존 전통건축부재(部材)와 전통건축의 계승 및 수리기술 영역의 보존이라는 원래의 재단 존립의 취지와는 많이 동떨어져 보인다는 점에서, 재단의 명칭 변경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2. 부칙 : 재단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 필요성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의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41조의2에 따라 재단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재단의 명칭, 정관, 재산 등의 물적 요건, 임직원 등의 인적 요건 및 기존의 행위의 효력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부칙에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⁶⁾.

참고로, 종전의 “한국문화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진흥원”으로 변경 시(2023. 5. 16 개정)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국가유산기본법」 부칙에 규정하고 있음⁷⁾⁸⁾.

6)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국회사무처 법제실, pp.877~882

7) 「국가유산기본법」 부칙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2조(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재단의 사무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진흥원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단 소속 직원은 국가유산진흥원 소속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문화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국가유산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8) 「지능정보화 기본법」 부칙 <법률 제17344호, 2020. 6. 9.>

제2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정보화진흥원”이라 한다)은 이 법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능정보사회원으로 본다.

문 의 처
02)6788-5379

-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정보화진흥원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원이 승계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정보화진흥원의 명의를 지능정보사회원의 명의로 본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정보화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정보화진흥원에 대한 행위는 지능정보사회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지능정보사회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정보화진흥원의 임직원은 지능정보사회원의 임직원으로 본다.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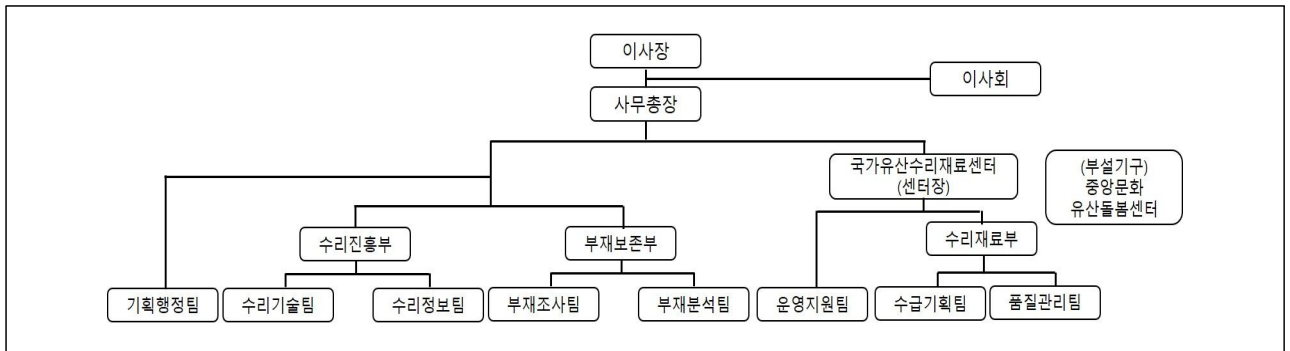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조직 및 예산 현황

1. 조직 및 인원

○ 재단: 3부 8팀 1부설(정원 43명, 현원 38명)

* 위탁사업 수행인력(26명) 미포함

○ 이사회: 14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감사 포함) 13명)



2.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비고
· (국가유산청)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영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운영·관리 - 전통건축부재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 - 국가유산수리 이력정보 관리시스템 구축(HBIM) - 국가유산수리기준 관리운영(품셈, 시방서) - 국가유산수리 기록 통합 관리(수리보고서, 감리보고서 DB)	6,907	5,280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운영 -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운영 - 전통재료 비축·공급(민간수급 불균형 재료 대상) - 전통재료 품질인증 및 실태조사	3,129	2,967	
· (국가유산청) 전통공예품 재료 수급 및 보호 기반 연구	200	-	
· (국가유산청) 목조 건축유산 연륜연대 및 수종분석 연구	59	1,000	
· (국가유산청)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운영	729	743	
· (지자체)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보수공사 - 고난이도 국가유산수리 지자체 민간위탁	700	700	
· (지자체) 나주 금성관 해체보수 - 고난이도 국가유산수리 지자체 민간위탁	4,400	-	'26년 이월예산(5,453)
합 계	16,124	10,690	